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09

발의연월일: 2020. 10. 22.

발 의 자:위성곤·정운천·서삼석

윤재갑 • 윤준병 • 진성준

오영훈・홍문표・이개호

박재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장승선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선원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내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새로이 신설함.

또한, 현장승선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선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선원교육을 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전교육, 현장 실습 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9조 및 제21조의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생을 추천하고 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

- 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기관의 실습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 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실습생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실습선박 승선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실습생의 건강상태, 인·적성 검사 등 선박소유자에 제공
- 2. 지정교육기관 실습선박에서 사전교육 실시를 위한 시기와 기간, 교육 내용
-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교원 등 대상 운영 설명회 개최 등
- 4. 실태점검 대상과 점검주기, 점검항목
- 5. 실태점검 결과의 조치, 신고
- 6. 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마련, 예방교육 실시, 책임교수 지정, 실습생 지도 및 관리
-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에 관

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 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신 설> 7.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 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 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 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 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 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 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 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 의2, 제305조의3 또는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 조의3, 제15조를 위반하여 징

② ~ ⑦ (생 략) <신 설> 역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 승선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 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 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 실습생을 추천하고 실습생의 안 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들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들 등이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기관의 실습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이 승선하 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

에 대하여 실습생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 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 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 계자의 현장실습선박 승선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실습생의 건강상태, 인·적성 검사 등 선박소유자에 제공
- 2. 지정교육기관 실습선박에서사전교육 실시를 위한 시기와기간, 교육 내용
-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교원 등 대상 운영

 설명회 개최 등
- 4. 실태점검 대상과 점검주기,점검항목
- 5. 실태점검 결과의 조치, 신고
- 6. 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마련, 예방교육 실시, 책임교수 지정, 실습생 지도 및 관

<u>리</u>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